

# 나래품방과후학교 「포근센터」 재위탁 보고

## 1. 제안이유

나래품방과후학교 「포근센터」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대상시설

#### 1) 시설현황

시 설 명	위 치	시설면적(m <sup>2</sup> )	종사자수(명)	비 고
문교포근센터	문교초 3층	81.50	2	센터장1, 상담사1
금나래포근센터	금나래초 2층	50.2	2	센터장1, 상담사1
두산포근센터	두산초 1층	67.50	2	센터장1, 상담사1

#### 2) 위탁현황

가) 수탁기관 : 우리랑가협동조합(대표 : 이영미)

나) 위탁기간 : 2020. 3. 1. ~ 2021. 2. 28.(최초위탁 : 2020. 3. 1.)

다) 운영인력 : 총 6명

라) 위탁금액 : 165백만원(시비120백만원, 구비45백만원)

## 나. 주요위탁 내용

- 1) 위탁기간 : 1년(2021. 3. 1. ~ 2022. 2. 28.)
- 2) 위탁내용
  - 가) 나래품방과후학교 「포근센터」 운영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무
  - 나) 실무협의회 운영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무
- 3)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4) 위탁금액 : 연190백만원(시비101백만원, 구비89백만원)

※ 시비 보조금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3. 재위탁 사유

나래품방과후학교 「포근센터」 위탁기간이 2021. 2. 28.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역량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함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
- 2)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

### 나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

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함

# 관 계 법 령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9. 7. 19.]

**제9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** ①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·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부지,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0. 7. 17.]

**제4조의2(민간위탁사무의 내용)**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·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2. 교육·도서관·체육·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4. 문화·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5. 자활·근로자복지·취업·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6. 교통·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청소·경비·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8.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<본조신설 2016.07.18.>